

2025년 2월 기준

2025년은  
고용보험  
30주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 고용보험 안내



고용노동부



# CONTENTS

---

## 고용보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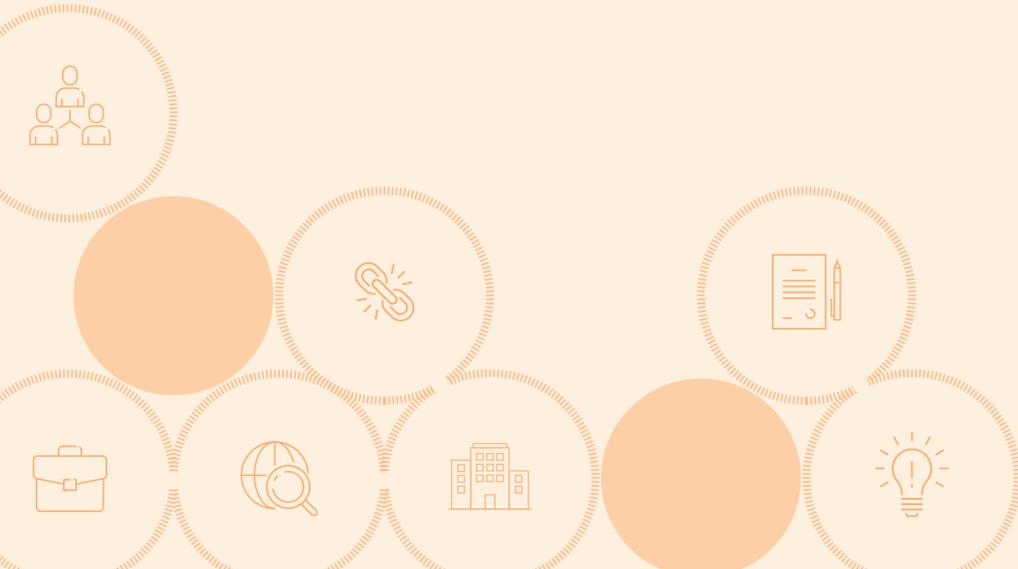
01 고용보험에 대하여	5
02 피보험자관리	10
03 실업급여	12
04 출산·육아지원	15
05 고용안정사업	20
06 직업능력개발훈련	28
07 자영업자 고용보험	34
08 예술인 고용보험	38
09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1

---

## 기타 취업지원제도

01 고용24	46
02 국민취업지원제도	48
03 기업도약보장패키지	50
04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52

# 고용보험 사업



# 01 고용보험에 대하여

##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범위

적용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li> <li>-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제외</li> <li>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li> <li>②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li> <li>③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li> <li>•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같은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은 적용이 제외됨</li> <li>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실업급여, 출산·육아지원 사업은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li> </ul> </li> <li>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대상</li> </ul> </li> <li>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만 적용</li> </ul> </li> <li>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li> <li>⑤ 외국인 근로자: 원칙은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li> </ul> </li> <li>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li> <li>⑦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li> </ul>

## 사업체계

구분	주요 내용	보험료율
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li> <li>-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지원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1.8%(근로자 0.9%, 사업주 0.9%)</li> <li>• 예술인·노무제공자: 1.6%(종사자 0.8%, 사업주 0.8%)</li> </ul>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li> <li>-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안정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등이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 등에게 일정 비용 지원</li> <li>- 사업주훈련지원, 일학습병행제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인 미만: 0.25%</li> <li>•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li> <li>•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li> <li>•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li> </ul> <p>*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p>

## 고용보험 심사제도

- 피보험자적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 ○ 심사처리절차



##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 근로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건설업·별목업 제외)

건설업·별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함(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할 경우 3% 할인)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함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14.1.1. 시행)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보수총액 및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요건: 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100 지원(근로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저임금(월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예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월 보수 230만원 보험료지원금

(단위: 원)

구분		지원전 보험료 부담액		보험료지원금(80%)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종사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20,700 (18,400)	103,500	16,560 (14,720)	82,800
사업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26,450 (18,400)	103,500	21,160 (14,720)	82,800

※ 보험료율: 고용보험 ▶ 근로자 2.05%(사업주부담분 1.15%), ▶ 예술인·노무제공자 1.6%(사업주부담분 0.8%) / 국민연금 ▶ 9%(사업주부담분 4.5%)

※ 월 최대: 고용보험 ▶ 근로자 및 그 사업주(16,560원, 21,16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14,720원) / 국민연금 ▶ 근로자 및 그 사업주(82,800원) 범위에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신청,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노무제공자 중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www.4insure.or.kr)으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 02 피보험자관리

구 분	내용 및 기한	제출 서류	제출 기관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사업주는 사업 종료, 이직 등으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이직 한 번에 처리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문화예술용역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이직 한 번에 처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과태료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4대보험 통합신고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



# 03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원내용	지원요건
근로(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p>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p> <p>* (예슬인)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p> <p>-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인정</p> <p>- 단기에슬인·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인정</p>

### ○ 지원수준

-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평균 보수)의 60%를 지급
- ※ '25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근로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6,000원(예슬인), 26,600원(노무제공자)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신청방법

- 실적 후 고용24([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 연장급여

###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지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사람으로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최대 2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로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지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li> </ul>
직업능력개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7,53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li> </ul>
광역구직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료] 실비 (1박당 상한액 서울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에 70,000원)</li> <li>• [운임]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li> </ul>
이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톤 이하는 실비 (5톤 초과 시 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 ※ 사다리차 이외 옵션은 제외</li> </ul>

# 04 출산·육아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li> <li>*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li> <li>※ ('25.2.23.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or 한부모 or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b>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원</li> <li>- <b>[일반육아휴직급여]</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th>1~3개월</th> <th>4~6개월</th> <th>7개월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td> <td>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td> <td>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모 함께 육아휴직제]</b>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45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li> <li>- <b>[한부모 근로자 특례]</b>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li> </ul>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li> <li>※ ('25.2.23.부터) 대상 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p><b>[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b>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센터에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능</li> <li>※ ('25.2.23.부터)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배 가산하여 사용한 경우)으로 확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0;">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math>\frac{\text{월 통상임금의 } 100\%}{\text{(상한액 220만원)}}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math></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0;"> <p>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math>\frac{\text{월 통상임금의 } 80\%}{\text{(상한액 150만원)}}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math></p> </div>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li> <li>*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li> <li>※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li> <li>**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li> <li>※ ('25.2.23.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10~90일로 확대</li> <li>•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li> <li>•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li> <li>-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li> <li>-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li> <li>-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li> </ul> <table border="1" data-bbox="826 274 1420 591"> <thead> <tr> <th data-bbox="826 274 917 333">구분</th> <th data-bbox="917 274 1216 333">최초 60일 (다태아 75일)</th> <th data-bbox="1216 274 1420 333">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26 333 917 490">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td> <td data-bbox="917 333 1216 490">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 지급                 </td> <td data-bbox="1216 333 1420 490">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 </tr> <tr> <td data-bbox="826 490 917 591">대규모 기업 근로자</td> <td data-bbox="917 490 1216 591">-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d data-bbox="1216 490 1420 591">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li> <li>•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li> <li>※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99일 지원</li> <li>-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li> </ul> </li> </ul>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li> <li>*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li> <li>※ ('25.2.23.부터)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일(유급)로 확대</li> <li>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최초 5일</th>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나머지 5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td> <td>-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401,910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분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규모 기업 근로자</td> <td>-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r> </tbody> </table> <p>※ ('25.2.23.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기간이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에서 20일(상한액 1,607,650원 잠정)로 확대</p>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401,910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분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401,910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분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난임치료휴가급여 ['25.2.23. 시행 예정]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li> <li>*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li> <li>※ ('25.2.23.부터) 휴가일수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li> <li>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2일분 상한액 160,760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최초 2일</th> <th style="background-color: #e6b89c;">나머지 4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td> <td>- (정부) 최대 160,760원 지급 -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의 차액분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급휴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규모 기업 근로자</td> <td>-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급휴가</td> </tr> </tbody> </table>		구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최대 160,760원 지급 -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의 차액분 지급	무급휴가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무급휴가
구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최대 160,760원 지급 -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의 차액분 지급	무급휴가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무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잔여기간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수혜 이력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직접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직접 자녀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 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직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24 로그인</li> <li>「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li> <li>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24 로그인</li> <li>「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 조회」 경로로 접속</li> <li>서비스이력 탭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원금 이력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성보호 선택,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li> <li>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24 로그인</li> <li>「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li> <li>「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li> <li>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사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 ▶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li> <li>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li> </ol>

# 05 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실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개월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li> <li>* 휴업 시작일 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등</li> </ul>	<p>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p> <p>*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li> <li>- 지원한도: 1일 6.6만원</li> </ul>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li> <li>* 휴직 시작일 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등</li> </ul>	
무급휴업·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li> <li>* 계획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 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 등</li> <li>- 무급휴업: ① 30일 이상 실시, ②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li> <li>- 무급휴직: ① 30일 이상 실시, ② 근로자대표 협의, ③ 휴직기간 시작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 3개월 이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승인된 금액</li> <li>- 지원기간: 재직기간 중 180일</li> <li>-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li> </ul>

##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촉진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li> <li>※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12조에서 정한 근로자</li> <li>※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li> <li>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다만, 여성가장, 중증 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li> </ul>

##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조치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li> <li>·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li> <li>※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li> <li>·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li> </ul>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게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만 인정</li> </ul> </li> <li>·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li> </ul>
업무분담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 수당 등의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li> <li>·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는 최고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지원금은 총액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 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 colspan="3">1개월 지급액</th> <th>최대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원격근무</td> <td>15만원 (월 4일~7일 활용)</td> <td>20만원 (월 8일~11일 활용)</td> <td>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td> <td>360만원 (1년간)</td> </tr> <tr> <td>육아기 시차출퇴근</td> <td>20만원 (월 6일~11일 활용)</td> <td>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td> <td></td> <td>480만원 (1년간)</td> </tr> <tr> <td>선택근무</td> <td colspan="3">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td> <td>360만원 (1년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li> </ul>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지원 시스템 예시</th> <th>지원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관리 시스템</li> <li>-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li> </ul> </td> <td rowspan="2">직접 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td> </tr> <tr> <td>재택·원격근무 혁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li> <li>-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li> </ul>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li> </ul>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관리 시스템</li> <li>-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li> </ul>	직접 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근무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li> <li>-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최대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80%</li> <li>·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단축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최대 750만원 한도</li> </ul> </div>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관리 시스템</li> <li>-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li> </ul>	직접 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근무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li> <li>-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li> </ul>																					

## 고용안정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산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지원기간]</b>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li> <li><b>[지원금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li> <li>② (임금감소액 보전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li> </ul> </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li> <li>※ 지원인원 한도: 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li> </ul>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지원기간]</b>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li> <li><b>[지원금액]</b>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정액)</li> <li><b>[지원대상 근로자]</b> 사업 참여 직전달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중인 자</li> <li>※ 지원인원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li> </ul>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 보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p>· 정년제도를 운영(1년 이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사업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 지원 제외)</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ackground-color: #fff9e6;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계속고용제도</b></p> <p>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원금액]</b>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별로 계속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li> <li>· <b>[지원기간]</b> 최대 3년, 분기 단위</li> <li>· <b>[지원금액]</b>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li> </ul>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 도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p>·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사업주</p> <p>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p> <p>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p> <p>* <b>고령자: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원금액]</b> 분기별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li> <li>· <b>[지원기간]</b> 최대 2년, 분기 단위</li> <li>· <b>[지원금액]</b>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li> </ul> <p>※ 사업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지원</p>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
설치비	시설전환비	대규모 기업	단독	3억원	- 소요비용의 60% 한도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인 경우 80%)	근로 복지 공단
			공동	6억원		
	시설전환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 소요비용의 90% 한도 (시설 매입비용 40%, 시설임차의 경우 80%)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공동 (2~4개소)	10억원		
			공동 (5개소 이상)	20억원		
	시설개보수비		단독· 공동	1억원		
	시설임차비		3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 기업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대규모), 80%(영아·장애아 시설), 90%(우선지원) 한도 -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한도로 지원(공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30~ 13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월 평균 근무시간</th> <th colspan="2">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th> </tr> <tr> <th>대규모 기업</th> <th>우선지원 대상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주 40시간 이상</td> <td>600,000원</td> <td>1,380,000원</td> </tr> <tr> <td>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td> <td>550,000원</td> <td>1,210,000원</td> </tr> <tr> <td>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td> <td>400,000원</td> <td>860,000원</td> </tr> <tr> <td>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td> <td>300,000원</td> <td>52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지원</li> <li>- 원장은 매월 말일기준 보육아동수(현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li> <li>- 방과후 보육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배치기준 외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li> </ul> <p>※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제외</p>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0,000원	1,380,000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0,000원	1,210,000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0,000원	860,000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0,000원	520,000원	근로 복지 공단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0,000원	1,380,000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0,000원	1,210,000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0,000원	860,000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0,000원	520,000원																			
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월 200~ 5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 말일 기준 보육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육 아동 수(현원)</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00명 이상</td> <td>월 520만원</td> </tr> <tr> <td>80명 이상 100명 미만</td> <td>월 440만원</td> </tr> <tr> <td>60명 이상 80명 미만</td> <td>월 360만원</td> </tr> <tr> <td>40명 이상 60명 미만</td> <td>월 280만원</td> </tr> <tr> <td>40명 미만</td> <td>월 200만원</td> </tr> </tbody> </table>	보육 아동 수(현원)	지원금액	100명 이상	월 520만원	80명 이상 100명 미만	월 440만원	60명 이상 80명 미만	월 360만원	40명 이상 60명 미만	월 280만원	40명 미만	월 200만원						
보육 아동 수(현원)	지원금액																				
100명 이상	월 520만원																				
80명 이상 100명 미만	월 440만원																				
60명 이상 80명 미만	월 360만원																				
40명 이상 60명 미만	월 280만원																				
40명 미만	월 200만원																				

# 06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지원한도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 ○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출석률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000인 미만 <b>60%</b> [우선지원 100%(위탁 90%), 1,000인 이상 40%]	1)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1,000인 미만 <b>80%</b> [우선지원 100%(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1,000인 미만 <b>80%</b> [우선지원 100%(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1)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1,000인 미만 <b>90%</b> [우선지원 100%(위탁훈련 95%), 1,000인 이상 기업 60%]

## 기간제 등 훈련우대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 유급휴가 훈련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①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② 훈련비 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

## 대체인력 채용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 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원내용
<p>협약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p> <p>*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p>	<p><b>[산업맞춤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내에서 지원</li> <li>②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 원 한도로 지원</li> <li>③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비용(100%)을 연간 1억 원 한도로 지원</li> <li>④ 훈련비·훈련수당: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li> </ul> </li> </ul> <p><b>[하이테크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프라 운영비용(시설·장비비 등): 1년차 최대 8억 원, 2~5년차 최대 4억 원까지 지원</li> <li>② 훈련비: 수료인원을 기준으로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또는 실비단가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li> </ul> </li> </ul> <p><b>[대중소상생 아카데미]</b></p> <p>훈련 운영비용(시설·장비비, 훈련비 등): 1개 프로그램당 최대 1.22억원 지원</p>

## 국민내일배움카드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li> <li>- 사립학교 교직원</li> <li>-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li> <li>-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li> <li>-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의 대표</li> <li>-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li> <li>-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li> <li>-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li> <li>-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단, 원격 대학의 재학생은 제외)</li> <li>- 75세 이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훈련비]</b>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300만원 지원+취업취약계층 등 200만원 추가지원</li> <li>**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특화과정,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li> </ul> </li> <li>-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li> <li>• <b>[훈련장려금]</b>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직종 훈련과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li> </ul> </li> <li>• <b>[특별훈련수당]</b>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및 총 350시간 이상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a href="http://www.work24.go.kr">www.work24.go.kr</a>)으로 신청</li> </ul> </li> <li>• <b>훈련과정 수강신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li> <li>-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24(<a href="http://www.work24.go.kr">www.work24.go.kr</a>)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li> </ul> </li> </ul> </li> </ul>

## 일학습병행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시키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p><b>[학습기업]</b> 해당 분야 기술력, 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높은 인력 양성 의지를 갖추고 있는,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기업</p>	<p>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등 훈련 인프라 지원</p> <p>① <b>훈련비(단가)</b>: 현장훈련(OJT) 4,000원, 현장외훈련(Off-JT) 6,500원</p> <p>② <b>전담인력수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현장교사의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학습근로자 관리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학습근로자수에 연동하여 월33만원~133만원)</li> <li>- HRD담당자 수당: HRD 담당자의 행정·전산업무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월 25만원)</li> </ul> <p>③ <b>훈련장려금</b>: 학습근로자의 훈련참여에 따른 학습기업의 생산성 손실보전 및 훈련 장려를 목적으로 지원(월 40만원, 단 20만원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지원)</p>
<p><b>[학습근로자]</b> 1년 이내 신규 입직자 및 특성화고, 전문대학·대학교 재학생 등</p>	<p>학습근로계약 체결로 근로자로서 보호, 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평가 통과시 국가자격 (일학습병행자격) 부여</p>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에 참여하는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li> <li>비정규직 근로자</li> <li>무급휴직자</li> <li>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li> </ul> <p>*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앙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10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p> <p>**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 한도로 연리 1% 대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li> <li>※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li> <li>훈련 수강 시부터 훈련기간 종료 시까지 월 단위 대부 지원</li> <li>※ 월별 신청 및 월별 신용보증서 발행</li> </ul>

# 07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②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

##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보험료 납부

###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의 익월 내 지원
  -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수혜 가능

## 구직급여

### ○ 지급요건

-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②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6개월 연속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임신·출산·육아,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로 폐업하였을 것
  - ※ 신청 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 지급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p>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훈련비]</b>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국가지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기본 30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li> <li>• <b>[훈련장려금]</b>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원, 5시간 이상은 18천원 지원(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b>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로 신청</li> <li>• <b>훈련과정 수강신청</b>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li> </ul>

## 08 예술인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
  - ※ 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음
  - ※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적용제외

- ①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 평균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 ※ 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피보험 자격관리

- 원칙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도급사업 특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 의무 부담
-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 **보험료** 월평균보수의 1.6%(예술인, 사업주 각 0.8% 균등 부담)
- **부과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80만원) 적용

## 구직급여

### ○ 지급요건

- ①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필요
  - 예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②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예) 종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예)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최대 6.6만원)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 출산전후급여

### ○ 수급요건

①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일부\* 허용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 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의 100%\*\* , 출산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

- 다만, 지급기간이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25년 기준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100일 지원

## 09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21.7월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위험물질)

(‘22.1월 적용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적용직종) 화물차주(택배·자·간선기사, 일반·특수형 자동차운송기사, 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캐디

###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②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피보험 자격관리

- 원칙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이중취득 당연가입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각 노무제공 계약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 **보험료** 월보수액의 1.6%(노무제공자,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보수 산정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소득이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기준보수 적용

(직종별 경비율) 보험설계사 26.5%,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8.6%, 택배기사 20.5%, 대출모집인 27.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8.9%, 방문판매원 22.0%,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8.6%,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2%,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16.5%, 퀵서비스기사 19.1%, 대리운전기사 31.6%,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49.9%,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관광통역안내사 25.6%,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29.3%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는 제외), 골프장캐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적용

(’25년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4,310,000원, 화물차주(택배 기간선기사) 3,150,000원, 화물차주(일반·특수형 자동차운송기사, 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기사) 4,830,000원, 골프장 캐디 2,699,994원

## 구직급여

### ○ 기여요건

①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필요

-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종사 필요

※ 다음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②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②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최대 6.6만원)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 2주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 출산전후급여

### ○ 수급요건

#### ①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②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일부\* 허용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 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의 100%\*\* , 출산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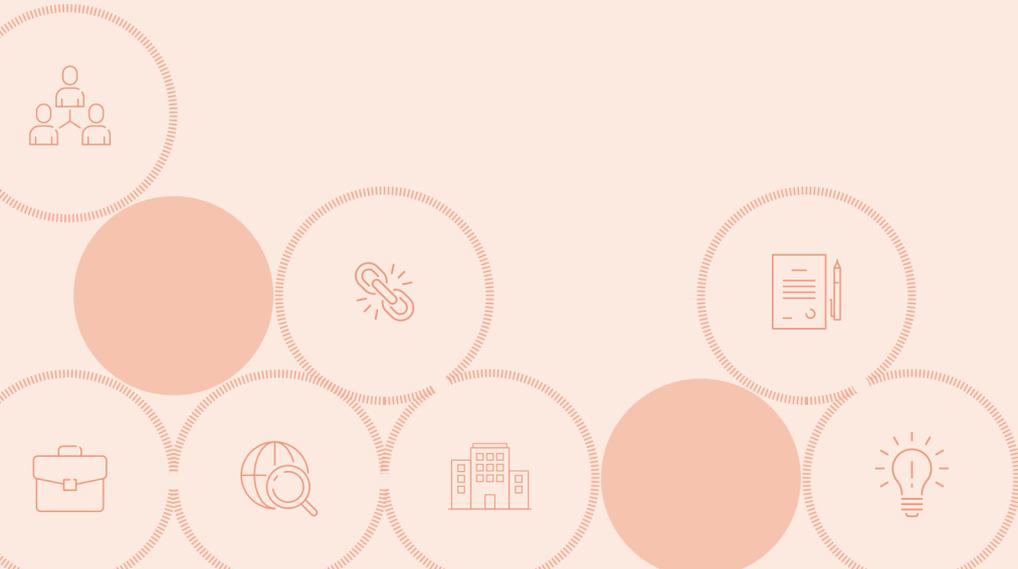
- 다만, 지급기간이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25년 기준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80만원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100일 지원

# 기타 취업지원제도



## 고용24란?

- 민원신고 · 신청에서 처리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개인은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구직신청),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 기업은 인재 검색, 구인광고 등록(구인신청),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정보(민간 취업사이트 일자리 정보 포함)와 이력서 작성(구직 등록)</li> <li>· 이력서 작성 방법 등 구직스킬 교육,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신청</li> <li>·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금, 일 경험 신청</li> <li>·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li> <li>· 실업급여 신청</li> <li>· 내일배움카드 신청,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정보 제공</li> <li>·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li> <li>· 청년/고령자/취약계층 채용, 유연근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li> <li>· 직원의 직무 교육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지원금 신청</li> <li>· 고용허가제 신청, 외국인 고용관리</li> <li>· 고용보험 가입 정보, 내 민원 진행 상황 조회</li> <li>·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설명자료</li> </ul>

## 주요서비스

○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고용24	잡케어	HRD-Net 출결관리용
<p>개인 서비스: PC, 모바일 기업 서비스: PC</p>	<p>직업선택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AI기반 진로 탐색·설계 서비스</p>	<p>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QR출결, 비콘출결 시스템 제공</p>
<div style="text-align: center;">  <p>PC</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드로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iOS</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C</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드로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iOS</p> </div> </div>

# 02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는 특고·프리랜서 등도 참여 가능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비경험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병역 의무이행기간 가산)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및 특정계층**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I & II 유형 공통)

-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 소득지원

구분	소득지원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6개월간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li> </ul>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6개월) 등</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li> <li>•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추가 훈련수당(월 20만원 × 최대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 II 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지급</li> </ul>

## 신청방법

###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 03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란?

- 기업의 구인 어려움 유형별로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지원대상

-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특히,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근로조건·작업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에 추천

### 지원내용

- (적극적 진단·컨설팅)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유형 분류

- 센터 담당자 또는 전담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업진단, 디지털기업지도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등 적극적 진단

- (맞춤형 지원) 구인 애로 기업에 집중 채용 알선, 고용 여건 향상 등 적극 지원

- 특히,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고용부, 유관기관의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기업의 인지도 제고 등의 지원 정책 연계

####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 복지수준(기숙사 등)
- 채용여건  
(기업인지도, 인력확보 가능성 등)

####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경기 및 기업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 분석

####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인사노무 컨설팅
  - 맞춤 인재 양성(훈련 연계)
  - 인프라 개선, 인지도 향상
- 통합 솔루션 제시

####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 밀착 상담
- 정부지원사업 연계
- 개선현황 모니터링

고용요건

채용여력



## 신청방법

###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담 후 방문 신청(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1	서울	02-2004-7883	17	평택	031-646-1294	33	포항	054-280-3013
2	서울강남	02-3468-4815	18	춘천	033-250-1915	34	구미	054-440-3317
3	서울동부	02-2142-8503	19	강릉	033-610-1941	35	영주	054-639-1142
4	서울서부	02-2077-3326	20	원주	033-769-0906	36	안동	054-851-8052
5	서울남부	02-2639-2400	21	태백	033-550-8644	37	광주	062-609-8736~9
6	서울북부	02-2171-1770	22	영월	033-371-6253	38	전주	063-270-9140
7	서울관악	02-3282-9214	23	부산	051-860-2135	39	익산	063-840-6573
8	인천	032-460-4830	24	부산동부	051-760-7287	40	군산	063-450-0629
9	인천북부	032-540-5818	25	부산북부	051-330-9893	41	목포	061-280-0539
10	부천	032-320-8992	26	창원	055-239-0945	42	순천	061-720-9126
11	의정부	031-828-0926~7	27	울산	052-228-1952	43	대전	042-480-3949
12	고양	031-920-3932	28	김해	055-760-6787	44	청주	043-230-6763
13	수원	031-231-7909~11	29	진주	055-760-6706	45	천안	041-620-7485
14	성남	031-739-3109, 3115	30	통영	055-650-1855	46	충주	043-850-4024
15	안양	031-463-0745	31	대구	053-667-6125	47	보령	041-930-6291
16	안산	031-412-6925	32	대구서부	053-605-6476	48	서산	041-661-5617

# 04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란?

- 시가만 잡케어(Job Care)로 개인의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경력설계·유지·전환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참여대상

-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특히, 진로지도·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노력 중인 구직자, 직업전환이 고민인 분 등에게 추천

## 지원내용

- 제공서비스
  - 잡케어(Job Care)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 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 1 구직자 역량 진단

- ☑ 심리적 특성(적성·흥미)
- ☑ 교육(전공), 훈련
- ☑ 경력, 자격
- ☑ 직무역량(보유스킬)

###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 고용동향 및 직업전망
- ☑ 일자리 수요 분석

### 3 경력개발 컨설팅

- ☑ 적합 직업 추천
- ☑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 ☑ 경력개발 설계(훈련, 자격, 일경험)

###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1:1 심층 상담
- ☑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 ☑ 적합서비스 제공, 연계

취업의욕

직무능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담 후 방문 신청(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1	서울	02-2004-7860~3	17	평택	031-646-1059	33	포항	054-280-3016~7
2	서울강남	02-3468-4765	18	춘천	033-250-1912	34	구미	054-440-3396
3	서울동부	02-2142-8927	19	강릉	033-610-1936	35	영주	054-639-1124
4	서울서부	02-2077-6076	20	원주	033-769-0973	36	안동	054-851-8056
5	서울남부	02-2639-2457	21	태백	033-550-8651	37	광주	062-609-8761
6	서울북부	02-2171-1902	22	영월	033-371-6256/6268	38	전주	063-270-9250
7	서울관악	02-3282-9240	23	부산	051-860-2058	39	익산	063-840-6548
8	인천	032-460-4714	24	부산동부	051-760-7116	40	군산	063-450-0618
9	인천북부	032-540-5815	25	부산북부	051-330-9816	41	목포	061-280-0522
10	부천	032-320-8916	26	창원	055-239-3514	42	순천	061-720-9199
11	의정부	031-828-0930	27	울산	052-228-1972	43	대전	042-480-3993
12	고양	031-920-3914	28	김해	055-330-9527	44	청주	043-230-6705
13	수원	031-231-7903~4	29	진주	055-760-6709	45	천안	041-620-7401
14	성남	031-739-4949	30	통영	055-650-1815	46	충주	043-850-4007
15	안양	031-463-3808	31	대구	053-667-6089	47	보령	041-930-6258
16	안산	031-412-6922	32	대구서부	053-605-6538	48	서산	041-661-5612







---

고객상담센터 1350  
[www.1350.moel.go.kr](http://www.1350.moel.go.kr)

전국 고용센터 안내 1350  
[www.work.go.kr / 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http://www.comwel.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http://www.hrdkorea.or.kr)

---